제2022 - 5호

기 관 경 고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202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현업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경고처분 하오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2.

행 정 안 전 부 장 관

2021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 2021. 11. 17. ~ 12. 3.(13일간)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청 41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울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및 운영 관련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내　　용

1.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관[1]은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명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업공무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현업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정액분 지급)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현업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

1) 2018년도까지는 구청 ◎◎◎◎과 부서내 ●●●●●팀으로 운영(◎◎◎◎과장이 휴일근무명령 등 승인) 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관에서 자체 업무 추진(○장이 휴일근무명령 등 승인)

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별로 다음 각 호[2]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리고,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은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관은 일반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계사실

위 관서에서 제출한 현업공무원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에 따라

---

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현업공무원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에 대하여 위 관서는 [붙임]과 같이 최근 5년간 약 48,066천 원[3](월 평균 801천 원, 8명)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도부터[4] 정부합동감사일(2021. 11.) 현재까지 수당 지급담당자 및 담당 팀장 등은 해당 규정을 확인·검토하지도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소속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관서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관련 부적정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현업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 2021. 1. 18. 제정·시행)」 Ⅳ. 근무일과 공휴일 “4. 현업공무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중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

3) 해당 지급액은 최근 5년간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총액이며, 인사발령 등에 따른 위 관서 전입자의 이전 부서 근무기간의 정액분, 타 부서 전출자의 정액분, 기타 타 부서 지원근무 관련 정액분 등은 반영되지 않음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하여 문서등록대장에서 확인되는 시점으로 작성 (2013년 9월분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 ◎◎◎◎과-0000)

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이며,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에 따르면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식사·수면·휴식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예규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현업

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

위 관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매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휴일근무자를 편성·배치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간(09시～18시)에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제출한 휴일근무 현황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관장이 현업공무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아래 <표-1>과 같이 1개월 간 휴일근무를 1회도 실시하지 않거나, 월 1～2회 정도의 휴일 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등의 적정한 검토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표-1> 2021년도 현업공무원 근무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비고
인원		8	8	8	8	8	8	8	8	8	8	
휴일근무	0회	**8**	**8**	-	-	-	**2**	**8**	**1**	**1**	-	
	1회	-	-	**5**	**5**	**3**	**2**	-	**4**	**4**	**4**	
	2회	-	-	3	3	5	4	-	3	3	3	

※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에 따라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관서는 현업공무원 관련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지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대하여 총괄하는 부서인 ◇◇과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 미수립,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등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부당 지급에 대하여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관 및 ◇◇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현업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업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자체 지정 기준 수립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하였다.

다. 관계기관 의견

(1) 북구 ○○○○○관

정상근무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관 운영과 관련하여, 북구 ○○○○○관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관 특성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많은 ▽▽이 이루어지는 바 현업 공무원 등을 지정하고 매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였고,

매월 평일 및 휴일근무자 배치계획을 ○장 결재를 득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시 최소한의 필수요원 1~2명을 ○○○○○관장 결재 방식의 휴일근무 배치 건으로 지정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필수요원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현업공무원에 지급할 수 없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부당지급건과 관련하여 북구 ○○○○○관 특성상 평일근무의 초과근무의 경우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였으며,

북구 ○○○○○관은 ▨▨일도 없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일반근무와 현업근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1) 북구 ○○○○○관

위 관서의 의견과 같이 ○○○○○관 특성상 현업공무원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휴일 근무 배치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

정·운영하였더라도,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은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관의 특성에 따라 평일근무(일반근무)와 휴일근무(현업근무)를 병행하였다고 해서 규정과 달리 임의로 해당 현업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관서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기관경고]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소속 현업공무원에게 장기간 지급하고,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점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중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입자의 정액분, 지원근무자 정액분,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한 확인·검토 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부당 지급액을 산정하여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자체 지정 기준 미수립,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등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업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현황(울산광역시 북구)

(단위: 명, 원)

구 분	합 계	
	지급인원	지급액
총 계		**48,066,567**
2021.10월	8명	877,200
2021. 9월	8명	870,640
2021. 8월	8명	824,760
2021. 7월	8명	778,880
2021. 6월	8명	850,990
2021. 5월	8명	877,200
2021. 4월	8명	877,200
2021. 3월	8명	877,200
2021. 2월	8명	877,200
2021. 1월	8명	877,200
2020.12월	8명	857,260
2020.11월	8명	857,260
2020.10월	8명	857,260
2020. 9월	8명	857,260
2020. 8월	8명	849,260
2020. 7월	8명	857,260
2020. 6월	8명	857,260
2020. 5월	8명	857,260
2020. 4월	8명	847,910
2020. 3월	8명	847,910
2020. 2월	8명	847,910
2020. 1월	8명	847,910
2019.12월	8명	821,910
2019.11월	8명	821,910
2019.10월	8명	814,160
2019. 9월	8명	821,910
2019. 8월	8명	801,590
2019. 7월	8명	821,910
2019. 6월	8명	821,910
2019. 5월	8명	821,910
2019. 4월	8명	821,910
2019. 3월	8명	793,890
2019. 2월	6명	591,040
2019. 1월	6명	598,200
2018.12월	8명	796,590
2018.11월	8명	796,590
2018.10월	8명	796,590
2018. 9월	8명	740,870
2018. 8월	7명	713,020
2018. 7월	8명	796,590
2018. 6월	8명	785,447
2018. 5월	8명	796,590
2018. 4월	8명	796,590
2018. 3월	8명	796,590
2018. 2월	8명	796,590
2018. 1월	9명	841,161
2017.12월	8명	768,299
2017.11월	8명	773,710
2017.10월	8명	744,970
2017. 9월	8명	751,290
2017. 8월	8명	751,290
2017. 7월	8명	715,050
2017. 6월	8명	759,910
2017. 5월	8명	759,770
2017. 4월	8명	759,770
2017. 3월	8명	735,190
2017. 2월	8명	735,190
2017. 1월	8명	735,190
2016.12월	8명	720,640
2016.11월	8명	720,640